

# 노년문화연구소 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 및 목적)** 이 규정은 노인 문화 연구에 관한 관련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, 산학협력, 교육, 국제교류 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실현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호서대학교 노년문화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사업내용)**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실버산업연구에 대한 지원
2. 산·학·관·연 협동프로그램의 개발, 운영
3. 세미나, 학술회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사업 수행
4. 기술지도, 기술이전 및 상품화 지원 등 각종 산학협력 사업 수행
5. 전문인력 양성 (학부, 대학원생 등)
6.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
7. 산업체 기술인력의 수탁교육
8. 교육 관련 수익사업 전개
9. 기타 연구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수행

## 제2장 조직 및 구성

**제4조(조직)** ① 연구소에는 교육부, 연구부, 대외협력부, 행정지원부 등을 둘 수 있다.

- ② 교육부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담당한다.
- ③ 연구부는 연구 기획 및 세부과제별 연구를 담당한다.
- ④ 대외협력부는 산학협력사업과 대외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,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업무를 담당한다.
- ⑤ 행정지원부는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
**제5조(구성)**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성원을 둘 수 있다.

1. 연구소장: 1명
2. 부소장: 1명
3. 연구소에 상임연구원, 비상임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구원, 박사후연구원(Post-Doc), 전문위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.
4. 행정직원 약간 명
5. 연구소내의 연구원 임용은 대학의 ‘연구원 임용규정’에 준용한다. 단, 연구보조원은 학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임원)**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연구소장: 1명
2. 부소장: 1명

**제7조(임명)** ① 연구소장은 본교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구소장과 부소장의 협의 하에 소장이 연구원을 임명한다.

**제8조(업무)**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소장은 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연구를 총괄한다.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9조(구성및 회의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둔다

②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2. 예산 및 결산
3. 규정 개정 발의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제4장 재 정

**제11조 (재정)**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**제12조 (회계연도)**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년도에 준한다.

### 제 5 장 폐 소

**제13조 (폐소)**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### 제 6 장 보 고

**제14조 (보고)**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  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## 제 7 장 보 칙

제15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6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종전의 규정은 폐지한다.